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목적에
장애인 스포츠관람권·시청권 보장 추가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73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목적에 장애인 스포츠관람권·시청권 보장 추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예지의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8. 28.
3. 회 부 일: 2024.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시행,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 시청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목적에 장애인 스포츠관람권·시청권 보장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목적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시청권 보장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 시청권 보장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가·지자체에게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그럼에도 장애인스포츠 방송은 적은 편성횟수, 불리한 편성시간대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목적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 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최근 10년간 올림픽 대비 패럴림픽 중계시간이 약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편성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점,

1)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표] 최근 10년간 올림픽-패럴림픽 중계시간

구분	총 중계 시간 (단위: 분)					올림픽 대비 패럴림픽 중계시간 비율(%)
	KBS1	KBS2	MBC	SBS	합계	
2012 런던 올림픽	9,630	10,360	15,465	13,305	48,760	2.6
2012 런던 패럴림픽	710	-	55	490	1,255	
2014 소치 올림픽	4,090	8,060	10,080	9,445	31,675	3.6
2014 소치 패럴림픽	755	-	305	90	1,150	
2016 리우 올림픽	10,525	13,380	13,420	12,775	50,100	3.3
2016 리우 패럴림픽	710	230	375	320	1,635	
2018 평창 올림픽	8,100	7,965	11,855	10,500	38,420	14.9
2018 평창 패럴림픽	1,070	865	1,980	1,820	5,735	
2020 도쿄 올림픽	9,795	13,475	13,580	13,850	50,700	7.2
2020 도쿄 패럴림픽	1,780	265	1,025	580	3,650	
2022 베이징 올림픽	3,325	10,530	9,605	10,795	34,255	5.6
2022 베이징 패럴림픽	695	360	560	305	1,920	

* 현재는 주로 한국선수들이 출전한 패럴림픽 경기를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모아서 오후 시간대(2~4시)에 내보내는 형태로 방송하고 있음(문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장애인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²⁾

2)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4. 5. 28., 2016. 2. 3.>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스포츠방송 시청권 지원을 위해 예산사업으로 KPC-TV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종 장애인스포츠대회의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 영상 제공 등의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지원 사업 현황

구분	내 용
사업명	‘장애인체육 인터넷TV 운영’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5561-301)’ 내역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목적	장애인스포츠 대회 중계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장,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도모
집행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24년도 예산	385백만원 - 중계운영 318백만원 - 방송콘텐츠 제작 및 송출 60백만원(3백만원x20편) - 사업추진 관련 기타 사업 7백만원(0.6백만원x12월)
지원내용	(인터넷 TV 중계) 국내 장애인스포츠 대회 중계(60회) - KPC TV홈페이지 운영: www.kpc-tv.kr - 생중계매체: 4개(KPC TV,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 케이블TV 통해 녹화중계 병행(회당 중계단가 약 5백만원) - 홈페이지 통해 경기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 영상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종목·다양한 대회 중계 진행(국내종합대회, 종목별 대회 등) - 지상파 및 케이블 유관 방송사 연계 중계(KBS, 복지TV 등) -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서버 이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저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스포츠방송 시청권 및 관람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장 시설의 배리어프리, 방송중계편성, 시청편의서비스 등 관련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현재 한국야구위원회가 시각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음성중계서비스가 탑재된 전용 단말기를 야구 경기장에 비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처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 시청권을 직접 ‘보장’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표]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지원 사업 현황

구분	내 용
사업목적	프로야구 경기의 음성중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경기관람권 지원
사업근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8조의3
집행기관	한국야구위원회(KBO)
'24년도 예산	세부사업 ‘주최단체 지원(5261-317)’ 중 165백만원
연혁	2023년~
지원내용	○장소: 서울 잠실야구장, 부산 사직야구장,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등 3곳 ○대회: KBO리그 정규시즌 및 포스트시즌 등 ○방식: 경기장에 실시/간 음성중계서비스(현장 중계차의 오디오 소스 송수신)가 탑재된 전용 단말기 총 300개 비치(구장당 100개) ○신청: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신청, 해당 좌석까지 배달·회수 ○효과: 개인 이어폰 등으로 중계방송 청취 시 발생하던 현장음과의 시차*를 축소시킴으로써 현장감 제고 *시차 약 5~10초 발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및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권 등의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기본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표] 관련 유사 법률안

법률안	신설 내용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1)	제17조의2(스포츠 방송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방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방송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2)	제18조의4(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국민체육진흥법</u> <u>일부개정법률안</u> (의안번호 <u>2203273</u>)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6.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

문 의 처

02)6788-5375